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47

발의연월일: 2024. 8. 12.

발 의 자: 강경숙·황운하·조 국

이해민 • 박희승 • 김한규

백승아 · 김준형 · 김선민

민병덕 · 신장식 · 서왕진

박은정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취업교육 및 사용자를 위한 교육 실시,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숙사의 제공 및 보증보험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.

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 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,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 용에 사회 적응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, 외국인근로자의 고 충 상담 및 해결 지원을 위한 고충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 는 것임(안 제5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점검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고 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.

- 1. 사업장의 근로조건
- 2. 제22조의2에 따른 기숙사 설치 및 운영 현황
- 3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태
- 4.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고용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관리주체또는 사용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

-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-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의 시기,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의 시 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(周知)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"을 "국내 취업활동 및 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항과 인권 등에 대한"으로 한다.

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의3(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의 설치 등) 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고충에 대한 상담 및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충신고센터(이하 "신고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국가는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2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의2.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
- 제3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의2.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

부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조의2(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점검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점검할수 있다. 1. 사업장의 근로조건 2. 제22조의2에 따른 기숙사 설치 및 운영 현황 3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태 4.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・군수・구청장"이라한다)은 제1항의 고용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.

제11조(외국인 취업교육) ① 외국 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 교육기관에서 <u>국내 취업활동에</u> 필요한 사항을 주지(周知)시키 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구를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④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 결과 위법 또는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

수 있다.
⑤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의 시기,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의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

제11조(외국인 취업교육) ① -	
국내 취업활동	및
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항과	인

<u>기 위하여 실시하는</u> 교육(이하 <u>권 등에</u> "외국인 취업교육"이라 한다)을 -------받아야 한다.

②·③ (생 략) <신 설>

제2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2. ~ 5. (생 략)

<u>권 등에 대한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4조의3(외국인근로자 고충신
고센터의 설치 등) ① 외국인
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고충에
대한 상담 및 해결을 지원하기
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
센터(이하 "신고센터"라 한다)
를 설치할 수 있다.
②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<u>정한다.</u>
③ 국가는 신고센터의 설치와
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
<u>할 수 있다.</u>
제29조(벌칙)
1. (현행과 같음)
1의2.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
여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하
지 아니한 사용자
9 ∼ 5 <i>(</i> 혀해과 간으)